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지은 것을 신고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89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됨에 따라,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청구서 서식을 마련 하는 한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방식의 개선, 발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마련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간 등록기준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등록기준 예외기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굴 등의 죄 포상금 및 발굴조사 기간연장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마련

-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16호 신설)
-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간연장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별지 제5호의3 신설)

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 개선(안 제2조제1항)

- 민간 비영리법인과 기타 기관과의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자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생략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영 제28조의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사기관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1명 ○ 준조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 준조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 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 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3명(국가유산 분야 1명, 수중 분야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2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보존처리 필수장비 제외)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보존처리 필수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실체 현미경, 건조기, 유물보관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유적 정보	유적명	(허가번호 :)	
	발굴기간	○○.○.○ ~ ○○.○.○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조사기관		
③ 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30일 이내) m²		
④ 연장사유	연장구분	☐ 여러 문화층이 확인된 경우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 기타 사유	
	구체적 사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사진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포상금 지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 분	징역 (금 고)		
	벌금		
	선고· 기소유예		
징역·벌금· 선고 일자			
내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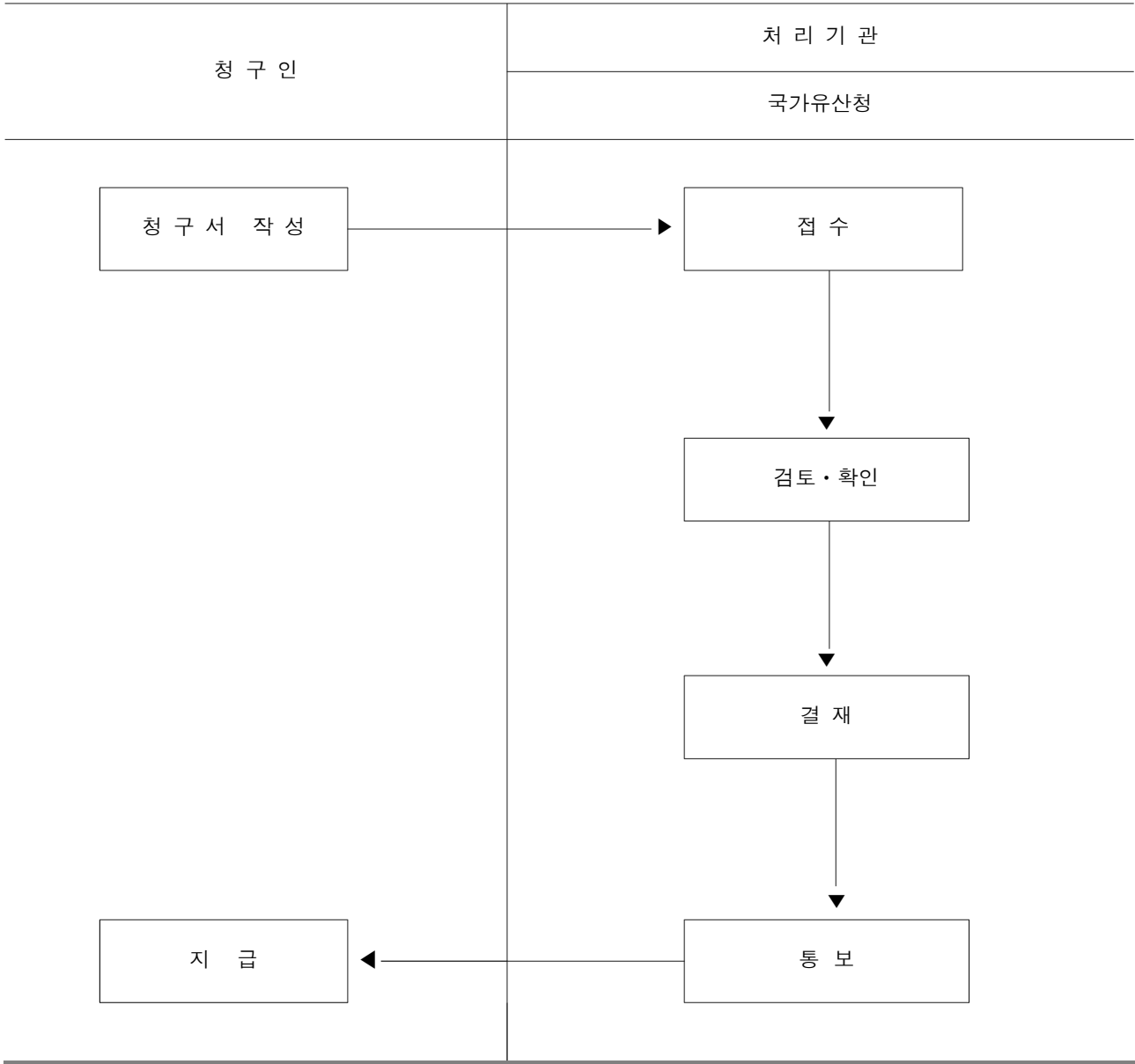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u>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u>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 ----- ----- ----- ----- ----- ----- ----- ----- ----- <u>공개하여야</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u>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u>
<u><신설></u>	<u>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영 제28조의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국가유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연 락 처	(042) 481 - 3133, 3135